



# 발전노동자

민주노조 시수!  
현장조직력 강화!

|| 발행처: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 발행인: 김재현 || 발행일: 2012년 2월 8일(수)

## 2/9(목) ~ 2/10(금) 규약 개정 찬반투표의 의미

정부의 반쪽짜리 복수노조 시행과 더불어 사측의 노조파괴공작으로 5개 발전회사에 회사노조가 설립되었다. 그로 인해 발전노조 전체 조합원수와 조합비 수입이 1/5 정도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민주노조의 영속성을 위한 적절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작년 여름부터 대두되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현재의 조직 체계대로 6대 임원선거가 치러진다면, 발전노조(특히 중앙과 본부)는 식물노조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제41차 중앙위원회(2011. 12. 28)에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조직개편위원회의 주도로, 수차례 현장 의견수렴과 토론회가 진행되었다(하단 경과 참조). 마침내 제42차 중앙위원회(2012. 2. 1)에 참석한 중앙위원들은 치열한 토론을 거쳐 조직개편의 원칙에 합의하였고, 규약 개정안 초벌 검토까지 마쳤다.

최종 확정된 규약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약 개정은 시작일 뿐이다. 본부와 예산이 통합되더라도 여전히 중앙의 예산은 이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지부의 상황 또한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각종 기금을 조합비로 전용해서도 안되며, 조합비를 인상해서도 안된다. 6대 집행부 각급 임원은 새로운 각오로 스스로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제42차 중앙위원회에서는 6대 집행부가 향후 사업에서 반영해야 할 다양한 실질적 방안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였다.

회사노조의 한계나 어용성이 입증되어 조합원들이 발전노조로 회귀하는 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당당하고 따뜻하게 그들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자!

### <조직개편위원회 활동 경과>

- 2011. 12. 28(수) 제41차 중앙위원회 : 조직개편위원회 구성(김준석, 김대중, 신종승, 김호, 제용순)
- 2011. 12. 29(목) ~ 2012. 01. 18(수) 논의 진행
  - 규약 및 규정 개정안 마련에 앞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조합원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
  - 자료수집 및 분석, 관련 근거 검토 등을 통해 초안 마련
- 2012. 01. 19(목) ~ 01. 20(금) 초안 검토 및 의견 수렴(중앙사무실) : 본부위원장, 중앙사무실 출근자
- 2012. 01. 20(금) 발전노조 조직 개편 논의안 이메일 발송(중앙위원) : 토론회 개최(01.26) 공지
- 2012. 01. 20(금) ~ 01. 26(목) 조합원 의견 수렴(지부별)
- 2012. 01. 26(목) 발전노조 조직 개편 논의안 토론회(중앙사무실) : 본부위원장, 조직개편위원, 기타 조합원
  - 규약 및 규정 개정(안) 초벌 검토
- 2012. 01. 27(금) 토론회 결과 이메일 발송(중앙위원)
- 2012. 01. 27(금) ~ 01. 31(화) 조합원 의견 수렴(지부별)
- 2012. 02. 01(수) 제42차 중앙위원회 : 조직개편안 및 규약개정안 토론
- 2012. 02. 02(목) 규약개정안 찬반투표 공고(규약개정 초안 홈페이지 게시 및 이메일 발송)
- 2012. 02. 02(목) ~ 02. 06(월) 조합원 최종 의견 수렴(지부별)
- 2012. 02. 06(수) 규약개정 최종안 홈페이지 공지

## 규약개정안 주요 내용

- ① **본부 예산과 집행권은 중앙에 통합하여 운영(제56조 ~ 제71조)**
  - 조합비 및 전임자수 감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별노조의 효율성 추구.
  - 교섭권 위임과 관련한 각종 조항 삭제
  - 본부운영규정을 폐지하는 대신에 주요 내용을 규약으로 가져 옴.
- ② **수석부위원장 직제를 폐지(제48조, 규약 전반)**
  -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을 슬림화.
- ③ **조합비 및 기금 인상 요건 강화(제24조)**
  - 대의원대회 기능에서 총회 기능으로 변경.
- ④ **대의원 배정 기준 변경(제29조)**
  - 민주성 담보를 위해 지부단위 조합원 50명당 1명에서 25명당 1명으로 변경.
- ⑤ **중앙회계감사에 대한 위원장 제청권 삭제, 특별회계감사 제도 신설(제42조, 제50조)**
  - 회계감사의 중립성 향상. 필요시 조합원, 대의원 또는 중앙위원이 특별회계감사를 직접 주관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
- ⑥ **미운용 회의체 삭제(제37조 ~ 제40조)**
  - 상임위원회, 본부대표자회의 등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회의체 삭제
- ⑦ **임원 해임의 요건 완화(제53조)**
  - 조합의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 ➡ 조합의 규약 위반 등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
- ⑧ **본부위원장 및 지부위원장의 명칭을 본부장 및 지부장으로 변경(규약 전반)**
  - 체계 명료화, 명칭 간소화, 권위주의 청산
- ⑨ **조합 정상화를 위한 경과조치 신설(부칙 제2조)**
  - 조기선거 실시(3월 둘째주 ➡ 2월 마지막주)
  - 각급 임원의 임기는 선출 직후부터 개시
  - 11년차 본부 결산을 위해 대의원대회 제한적으로 인정

## 규약개정안에 대한 보충설명

규약 제75조의 내용(필요시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이 규약 제24조 7호의 내용(조합비 및 기금의 인상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대회가 아닌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하도록 신설함)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있음.

☞ 규약 제24조 7호는 제42차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중앙위원이 조합원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하여 신설된 조항임. 제75조에서 말하는 '특별부과금'은 조합비 또는 의무금과 다른 성질의 금전임.

이 조항은 발전노조 출범 당시부터 있었던 조항으로 특별한 사안 발생에 따라 긴급 또는 부득이하게 지출할 수 밖에 없는 금전적 지출에 대해 언급한 것임. 실제로 제20차 중앙위원회(2006. 4. 21)에서 '공공운수연맹 총과업 투쟁기금으로 조합원 1인당 5,000원 납부'를 결의한 적이 있었음. 이는 상급단체 결정사항의 이행으로서 조합원 총회로 결정할 경우, 심각한 문제 발생이 우려됨.